

## 교원전공심화교육지원규정

제정	2001. 3. 1
개정	2005. 6. 1
개정	2012. 3. 1
개정	2018. 5. 1
개정	2020. 5. 25
개정	2023. 8. 21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교원전공심화교육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원의 경쟁력 제고와 교육과정 혁신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대상)**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우리 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한다.

② 심화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학교법인 청강학원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**제3조(절차)** ① 전공심화교육의 신청자는 교육의 목적, 교육과정의 내용을 스쿨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(삭 제)

③ (삭 제)

④ (삭 제)

⑤ 전공심화교육 신청자는 종합정보시스템에 교육 정보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고, 전자결재를 통해 학교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에 참여한다. 단, 집체 교육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표 교원 1명이 교원전공심화교육 집체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.

⑥ 전공심화교육 신청자는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교육복명서를 제출한다.

**제4조(지원방식)** ① 전공심화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는 대학이 부담한다. 다만,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대학과 수혜 교수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.

② 교육비의 지급기준은 신규 지원자를 우선하여 배정하고, 기 수혜자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.

④ (삭 제)

③ 교육비 지원액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**제5조(기타)** 전공심화교육 지원은 국내 온·오프라인교육과 국외 온라인 교육에 한하며, 교육장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